

웰-다잉(Well-dying)의 시대 -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공증”에 관한 소론

김철기
법무법인 한미 대표변호사

필자는 변호사이면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인법상의 공증인이기도 하다. 최근 공증업무를 보는 중에 80세 가까운 고령의 고객이 그 부인과 함께 자신이 병들어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생명연장장치 등을 중단하고, 고이 죽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증, 일명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공증”을 요청하였다. 관련 법규와 공증지침을 확인하고 공증을 해 드린 경우가 있었다. 공증을 해드리면서 공증된 서류가 법원이 허용하는 요건 중 하나라고 설명해 드리고, 뒤에서 적은 것처럼 다른 추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설명해 드렸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웰-다잉(Well-dying)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사전의료지시 공증이란 무엇인가? 이해를 돕는다면, 2008년 연대 세브란스병원의 김 할머니 사건이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즉 김 할머니 사건의 경우, 만일 건강한 김 할머니께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해 달라는 사전의료지시를 밝히면서 공증을 촉탁할 경우 이를 “사전의료지시 공증”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0세 건강시대가 된 현대인에게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통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죽는 것이야말로 삶의 질과 함께 죽음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인식들이 퍼져가고 있다.

과거에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이 의료적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장된 기간만큼 정신적·육체적 고통까지 함께 연장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는 부작용도 낳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존엄하게 죽을 권리인 일명 “존엄사”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2008년도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은 존엄사에 관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2008. 2. 5. 김 할머니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병원주치의 등이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김 할머니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미만성 뇌부종으로 진단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김 할머니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3번의 재판 결과 대법원은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장치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후 김 할머니는 201일을 더 생존하였다. 최초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면 곧 사망할 것이라는 당초의 의학적인 판단과는 달리 김 할머니가 자발적인 호흡을 통해 201일이라는 장기간 생명을 유지함에 따라 논란이 되기도 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위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아래의 허용요건에 한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존엄사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면서 그 허용요건으로 들고 있는 것은,

- ①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를 거부 내지 중단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밝힐 것
- ②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였을 것
- ③ 사전의료지시를 한 시점 이후 연명치료중단 시점까지 환자의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 ④ 환자 의사가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서명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될 것이 그것이다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은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허용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명시적으로 연명중단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말기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위 판결이 환자의 추정적 의사만을 근거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확인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학계와 실무계의 지적이었다. 생명과 죽음에 관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환자의 추정적 의사보다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비판이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여타의 허용요건에 비하여 중요시 되어야만 한다. 자신의 생명연장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존재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중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긴요한 것이 바로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공증”이라고 생각한다. 공증은 국가(법무부)가 인정한 공증인이 행하는 국가사무로 공증인은 변호사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증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환자가 원하는 의미의 공증서류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할 법률상 책임이 있고, 이에 따라 공증서류는 객관적 진실을 담보한다.

사전의료지시공증에 대한 모범적인 양식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일응 필자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양식은 아래 양식과 같다. 이 양식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의료지시 공증은 대리인에 의한 공증은 지양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본인의 자유롭고 명확한 의사확인이 요체이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의식불명의 환자에게 연명치료의 중단의사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공증함으로써 해서 존엄하게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전의료의향서라는 형태로 표준양식을 제정하고 19세 이상의 성인은 이를 필수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위 “사전의료지시에 대한 공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식)

사전의료지시서

제가 스스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담당 의사와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전의료지시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공증합니다. 저의 소망대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 (1) 제가 의식이 없어도, 기도 삽관이나 기관지절개술 및 인공기계 호흡치료법은 시행하지 말 것.
- (2) 제게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더라도 항암치료는 시행하지 말 것. (항암치료의 효과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저의 연령과 체력의 한계 때문)
- (3) 그 외 인공영양법, 혈액투석, 더 침습적인 치료술도 시행하지 말 것.
- (4) 탈수와 혈압유지를 위한 수액요법과 통증관리 및 생리기능유지를 위한 완화의료는 치료받기를 바라며, 임종시 혈압 상승제나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말 것.
- (5) 그 외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의료 내용은 대한의학회에서 공포하고 있는 최근의 임종 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지침에 따라 결정할 것.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제가 바라는 사항을 충실하게 실행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도장)
가족 성명 서명 (도장)

